

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(2022.12.1.)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.

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[소방시설법 제12조1항, 별표4]

- 업무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국방·군사시설,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,500m²이상인 종이 있는 것 (삭제)
- 노유자 생활시설
- 노유자·수련시설,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² 이상인 종이 있는 것
- 의원·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,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
- 보물(국보)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- 종합병원, 병원, 치과·한방·요양병원
- 전통시장
- 전기저장시설 (삭제)
- 고층건축물(30층이상) (삭제)

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입니다. 하지만 금번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* 속보설비 정비 신청 방법 *

1.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확인!
2. 관계인 협의(임주자 대표 회의 등) 후 관할 소방서에 정비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e-mail 중 선택)
3. 관할 소방서 속보설비 제외요건(24시간 건물관리인 상주, 사용용도 등) 확인 후 승인
4. 정비(철거)

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,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붙임 :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1부

소방서장

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

접수번호 신청인 주소	상 명		접수일자 구조 주소	처리기간 연락처
	건물명 주소	용도		
건축허가일				
신청 사항	<p>허가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사유 <input type="radio"/> 업무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국방·군사시설,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,500m² 이상인 종이 있는 것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노유자생활시설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노유자·수련시설,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바닥면적 500m² 이상인 종이 있는 것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의원·치과의원 및 한의원(임원실 有),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보물(국보)로 지정된 목조건축물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종합병원, 병원, 치과·한방·요양병원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전통시장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전기저장시설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고층건축물(30층이상)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기타(자진설비 등)</p>			

위와 같은 사유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었으나 제외할 수 있는 요건(□24시간 건물관리인 상주, □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)에 해당이 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.

날
월
연
(서명 또는 인)

OO소방서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건축물 대장 2. 특정소방대상을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진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